##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(약칭: 1인창조기업법)



[시행 2024. 8. 28.] [법률 제20361호, 2024. 2. 27., 일부개정]

중소벤처기업부 (창업생태계과) 044-204-7672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3. 3. 22., 2015. 2. 3., 2022. 6. 10.>
  - 1. "1인 창조기업"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(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)를 말한다.
  - 2. "청년 1인 창조기업"이란 39세 이하인 청년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.
- 제3조(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)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. 다만,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**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**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.
- 제5조(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(이하 "육성계획"이라 한다)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  -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개정 2022. 6. 10.>
  - 1.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
  - 2.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
  - 3. 1인 창조기업, 청년 1인 창조기업 등 대상별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
  - 4.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・관리에 관한 사항
  - 5.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-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<개정 2017. 7. 26.>
- 제6조(실태조사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1인 창조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  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1인 창조기업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<개정 2017. 7. 26.>
- 제7조(종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1인 창조기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1인 창조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7, 7, 26.>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8조(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)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  -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<개정 2017. 7. 26.>
  - 1.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
  - 2.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 법률 세무 등의 상담
  - 3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
  -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④ 정부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<개정 2024. 2. 27.>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 - 1의2.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
  - 2.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
  - 3.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  -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원센터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.<신설 2024. 2. 27.>
  - ⑥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·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24. 2. 27.>
- 제9조(지식서비스 거래지원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의 지식 서비스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식서 비스를 제공하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지식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2, 2017. 7. 26.>
 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교육훈련 지원)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(이하 "교육기관"이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
  -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④ 정부는 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.
  - ⑤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・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**제11조(기술개발 지원)**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2., 2017. 7. 26.>
  - 1. 1인 창조기업의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
  - 2. 1인 창조기업과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
  - 3.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제목개정 2013. 3. 22.]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12조(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) ① 정부는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하여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2. 3.>
  - 1.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아이디어의 도용(盜用)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
  - 2.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포기한 경우
  - 3.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화가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선정 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4. 부도·폐업 등의 사유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③ 제1항에 따른 선정의 기준·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취소의 절차,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5. 2. 3.>
- **제13조(해외진출 지원)**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, 국제 행사 참가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14조(홍보사업 등) 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26.>
  - 1.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・포상 및 홍보
  - 2. 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
  - 3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
- 제15조(금융 지원)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·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3. 3. 22.>
  - ②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,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·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.<개정 2013. 3. 22., 2016. 3. 29.>

[제목개정 2013. 3. 22.]

**제15조의2(청년 1인 창조기업의 우대)** 정부는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2. 6. 10.]

- 제16조(전담기관 지정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(이하 "전담기관" 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26.>
  -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
  -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  -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<신설 2024. 2. 27.>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
  - 2.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  -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담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.<신설 2024. 2. 27.>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24. 2. 27.>
- 제17조(조세에 대한 특례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「조세특례 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·법인세·취득세·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- 제18조(「식품산업진흥법」 및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)「식품산업진흥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 및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7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는「식품산업진흥법」제22조 및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0, 2, 18.>

[제목개정 2020. 2. 18.]

- 제19조(보고·검사) ① 정부는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  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.<개정 2017. 7. 26.>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·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- 제20조(청문)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2. 27.>
  - 1.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
  - 2.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
  - 3. 제12조제2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 취소
  - 4.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
- 제21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2. 3.>
  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22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제21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등의 임직원은 「형법」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- 제23조(과태료) ①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・징수한다.<개정 2017. 7. 26.>

부칙 <제20361호,2024. 2. 27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**(지원센터의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원센터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3조(전담기관의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